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년월일 : 2002. 2. .

제 출 자 : 서 초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명칭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제명 변경(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 ⇒ 서초구이동도서관)
- 나. 위탁관리 체제하의 불합리한 조항 수정·삭제 등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01. 12. 1. ~ 12. 20.)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동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문고지부에”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회계보조금”을 “일반회계”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서초구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사업) ① (생략) 1. ~4. (생략)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생략)</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③ 위원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생략)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생략)</p> <p>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서초구의 일반회계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p> <p>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한다.</p> <p>제3조(사업) ① (생략) 1. ~4. (생략) <삭제> ② (생략)</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생략) <삭제> 3. (생략)</p> <p>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서초구의 일반회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삭제></p>

현행	개정안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정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운영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제〉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삭제〉